

체코,

입국 시 비자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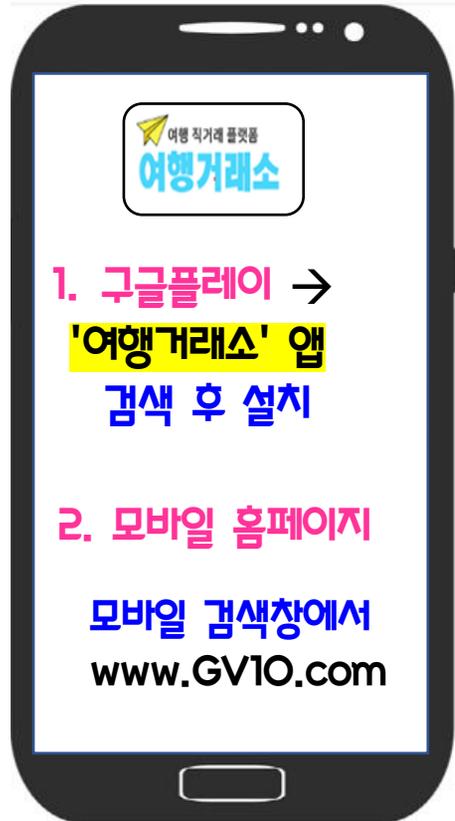
11년 12/31 기준

- 한-체코는 센겐협정 보다 양자협정이 우선 적용되어, 우리 국민은 체코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 (단, 체코 이외 국가를 방문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함. 예:숙박증 등)하며,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 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.
- ※ 단, 양자간 협정에 의한 권리는 오직 체코공화국 내에서만 유효하며, 체코 이외의 국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센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.
- ※ 또한 한-체코 90일 무비자 협정은 단순 관광·방문에 한한 것이기에 이를 악용해서는 안되며, 사증이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증을 취득 후 입국해야 함.
- 체코 인근 국가에 소재한 체코 대사관(또는 총영사관)에 체코 사증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, 이 경우 반드시 체코 재입국을 통해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합니다.
- 이 때,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하여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, 부득이한 상황으로 비센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운 경우, 인근 센겐 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거자료(ex:본인의 영문성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호텔숙박 영수증 등)를 제시하면 재입국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하지만 동 결정이 일선의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경우도 있고, 증거자료 인증에 대한 개인의 판단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, 동 건에 대한 내무부측 입장이 명시된 문건을 첨부하오니,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우리 국민께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동 문건을 소지하시길 권유 드립니다.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현장에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(234-090-41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주 체코 한국 대사관 (111231)

갤럭시 폰에서



모바일 검색창에서
모바일 홈페이지
www.GV10.com

-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
-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
-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
- 현지 생생정보
-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
-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!!

아이폰에서

